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4. 경수현 의원 외 8인 발의 (의안번호 329호)

나. 회부일자 : 2024. 8. 28.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공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안 제9조)
-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부실공사의 신고건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명시함(안 제10조, 안 제10

조의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세분화하고, 부실공사 신고 처리와 부실 측정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한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각 법규에 정해진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③ (생략)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④ ----- ----- -----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

현재 부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준공일 2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신고·접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세분하여 확대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각 법규별 하자담보 책임기한 >

법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등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발전설비 공사, 송전설비 공사 등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공사 등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피난기구,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등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곽, 탑석조물 등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 안 제10조제3항 삭제 및 제10조의2 신설은 부실 측정에 관한 규정이 신고 처리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며, 부실공사의 신고 건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생략)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 신설〉	제10조의2(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부서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관내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4. 양순임 의원 (의안번호 330호)
나. 회부일자 : 2024. 8. 28.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3.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된 비치장소가 너무 적어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되느바,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지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안 제3조제9호까지)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는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3조는 기존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3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 3.(현행과 같음) <u>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u> <u>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u> <u>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u> <u>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u> <u>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u> <u>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u> <u>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

- 현재 성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전 센터와 성북문화재단 일부 시설에 총 817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구청은 9월 중 비치 예정임.

< 성북구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2024년 8월 기준) >

연번	센터명	방연마스크	비고
총 계		817	
1	경영지원실	27	도시관리공단
2	레포트센터	80	"
3	개운산센터	50	"
4	북악골프센터	50	"
5	물빛수영센터	50	"
6	구민체육관센터	60	"
7	월곡배드민턴센터	30	"
8	해오름스포츠센터/구민회관헬스센터	60	"
9	성북펜싱체육센터	60	"
10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30	"
11	장위건강누림센터	30	"
12	거주자주차센터/견인보관소	30	"
13	공영주차센터	30	"
14	성북구청/보건소센터	40	"
15	아이조아센터	60	"
16	부모아이지원센터/sb장난감도서관	60	"
17	임대관리센터	30	"
18	종암동새날도서관	40	성북문화재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4. 김경이 의원 외 10명 (의안번호 331호)
- 나. 회부일자 : 2024. 8. 28.
-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3.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폐의약품 처리 관련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조문 검토

-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¹⁾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자목²⁾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항³⁾에 의하면, 구청장 등은 관할구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따라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제적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됨.
- 현재 폐의약품의 2023년 연간 수거량은 5,519kg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용 및 폐의약품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폐의약품 수거 실적>

(단위: kg)

성북구	소 계	수거함	약 국	우체통
1월	468	468	-	-
2월	230	230	-	-
3월	652	652	-	-
4월	333	333	-	-
5월	438	438	-	-
6월	345	345	-	-
7월	662	647	-	15
8월	585	560	-	25
9월	75	43	-	32
10월	774	749	-	25
11월	594	570	-	24
12월	365	348	-	17
총 계	5,519	5,381	-	138

□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폐의약품”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홍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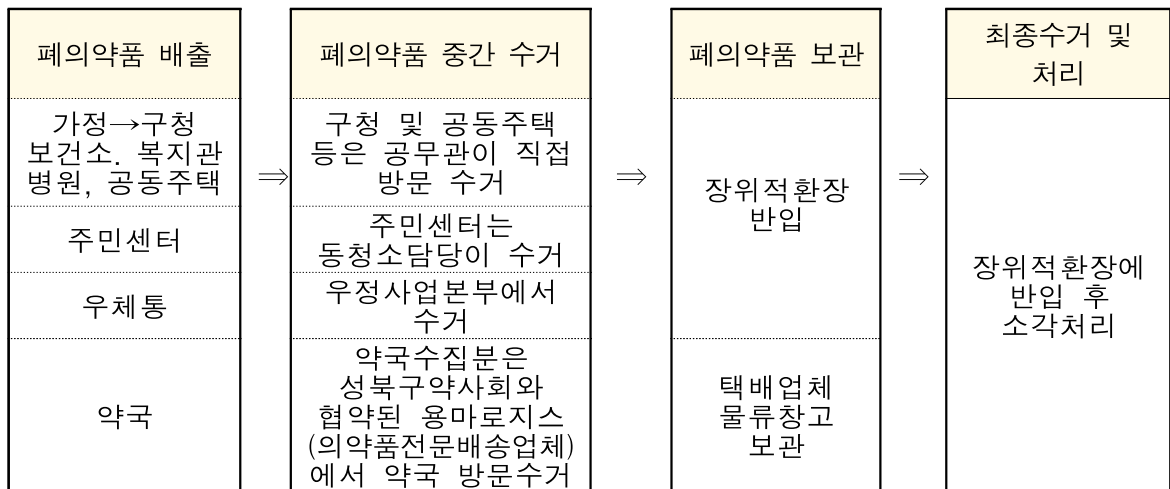
<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2024년 현재기준) >

합계	업종							
	약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공동주택	의원급의료기관	기타
39	0	1	20	4	2	10	2	0

※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수거 가능

※ 관내 우체통(41개)으로도 폐의약품 수거 가능

<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법 체계도 >



※ 폐의약품 수거주기

정기: 매월 1회 수거(마지막 목요일)

비정기: 배출량 초과 발생으로 필요시

※ 폐기물처리 대행(소각)업체에서 폐의약품 별도 소각처리(매월 1회)

- 안 제6조와 제7조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폐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가정 등에서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본 조례로 명문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 폐의약품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4. 양순임 의원 외 14명 (의안번호 332호)
나. 회부일자 : 2024. 8. 28.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통해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점자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19. ~ 2024. 08. 2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3조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점자 사용의 차별금지 대상 범위를 성북구와 구 소속 기관까지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와 제6조는 「점자법」 제7조4)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제8조5)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성북

4) 「점자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계획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성북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함.
- 안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6)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성북구 주관 행사 시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점자 자료가 제공될 수 있게 권장하도록 함 .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문서의 점자문서 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점자의 보급 및 지원, 점자문화의 확산,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점자는 「장애인차

5) 「점자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명시돼 있음.

- 또한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과 확산,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19호)
나. 회부일자 : 2024. 8. 28.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고영룡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규정상 필수 심의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 도모
나.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법규 상호간 체계 확립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기 간 : 2024. 07. 04. ~ 2024. 07. 24.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미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성별 영향 평가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u>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미반영	[미반영 사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상위법상 규정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준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⁷⁾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⁸⁾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고, 현행 제5호는 통합관리기금 관련 사항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삭제한 것이며,

〈안 제2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삭제된 조문)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3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재정·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성북구의회의 의원으로 범위를 명시함.

7)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 제3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 안 제3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위원의 임기 장기화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위원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사료 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됨.

〈안 제3조제4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 하며, 두 차례만 ----.

- 그 밖에 안 제5조, 제10조는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구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는 장기 미구성 중인 실무대책반 관련 등 유명무실한 조문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합리적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21호)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2.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영룡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금액
취득 (신축)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	성북동 296-8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96.39㎡	11,130,000
		성북동 260-65		

다.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2021.05.12. 故 서세옥 유족 작품 3,290점 기증 협약(최종 3,342점 기증)
 - 작품 기증 협약서에 서세옥미술관 건립 요청 명기
-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조성계획」 (구청장방침 문화체육과-24942(2024.7.18.)호)

라.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지역 주요작가인 故서세옥 작품 및 컬렉션(3,342점) 수증에 따라 성북구립미술관의 증대된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관(서세옥관) 신축
- 지역의 주요 한국 근현대 작가 기반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성북구립미술관의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을 위한 작가미술관 건립 및 운영

마. 건립부지 현황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성북동 260-65번지
- 규모 : 부지면적 660㎡(성북동 296-8 : 333㎡, 성북동 260-65 : 327㎡)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45.24%, 용적율 89.85%)

바. 기준가격

구분	항목	소재지	면적(m^2)	m^2 당 공시지가(천원)	기준가격(천원)
취득	토지 매입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333	3,696	1,230,768
		성북구 성북동 260-65번지	327	3,696	1,208,592
	건물 매입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124.31	-	36,817
		성북구 성북동 260-65번지	106.58	-	10,785
	건물 신축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996.39	-	7,522,000
		성북구 성북동 260-65번지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신축비

사.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4. 7. ~ '27. 12.
-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성북동 260-65번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0m^2$, 건축연면적 $996.39m^2$
- 건립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 신축
- 공간구성(안)

층 별	세부기능	면적(m^2)
지상 2층	기획전시실, 세미나실(라운지), 사무실 등	298.06
지상 1층	상설전시실, 물품창고, 임산부 수유실, 화장실 등	293.96
지하 1층 (주출입구)	인포데스크, 아트샵, 수장고, 작가 메모리얼공간·아카이브실, 주차장(8대) 등	404.37
합 계		996.39

- 소요예산 : 11,130백만원 <시비 4,500백만원 / 구비 6,630백만원 >
 - 부지매입 3,608백만원
 - 건립비 7,522백만원
 - (공사비 5,152백만원, 설비비 1,041백만원, 용역 및 예비비 등 1,329백만원)
- 예산액 산출방법
 - 부지 매입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 감정 결과 및 소유자 매매 희망가격
 - 신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조
- 계약방법
 - 감정평가업체 감정 결과 및 소유자 매매 희망가격 협의계약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 '24년 : 2024년 추경 혹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25년 : 2025년 성북구 예산(건립비) 및 2025년 서울시 예산(건립비)

아. 추진경과

- 2021.05.12. 故 서세옥 유족 작품 3,290점 작품 기증 협약
(최종 3,342점 기증) ※ 협약서에 미술관 건립 추진 명기
- 2023.10.27. ~ 2024.03.31.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4.06.25. : 사업부지 감정평가 진행

- 2024.08.02.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자. 향후 추진일정

- 2024. 하반기 : 부지매입 및 서울시 예산(건립비) 요청
※ 부지매입 발주 준비 중('24년 하반기 추경 후 '24.10월 중 계약체결 예정)
- 2025. 상반기 : 추가예산 확보 및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 2025. 하반기 : 건축 실시설계
- 2026. : 건축공사 및 전시 설계·공사
- 2027. 12. : 준공 및 개관 예정

차. 주관과 의견(문화체육과)

- 서세옥은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동양화가로, '묵림회(墨林會)' 설립을 주도하여 전통 회화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한국화를 선도한 작가임
- 또한 성북장학회 조직(1978년), 성북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 기증 및 건립 참여(2009년) 등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한국 미술계와 성북 지역에서의 위상과 예술적 성취가 공적으로 인정되는바, 지역민의 자부심이 될 그의 예술 세계를 널리 알리는 미술관 건립이 필요함

카.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위해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서세옥미술관 건립사업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故 서세옥(1929.2.7.~2020.11.29.)선생의 유족이 '21년 5월, 작품 3,290점(최종 3,342점) 기증과 미술관 건립을 협약함에 따라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토지 333㎡, 100평), 성북동 260-65번지(토지 327㎡, 99평) 2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1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사업개요

- ☐ 사업명 : 성북구립미술관 분관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조성
-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96-8번지, 성북동 260-65번지 2필지
- ☐ 규모 : 토지 660㎡(200평), 건물 연면적 996.39㎡(301평),
건물 1개동(지하1, 지상1·2층)
- ☐ 사업기간 : 2024. 7. ~ 2027. 12. <예정>
- ☐ 사업내용 : 서세옥의 아들 서도호의 작업실 부지매입 후, 「성북구립서세옥미술관」 건립
- ☐ 총사업비 : 11,130백만원(토지매입비 3,608백만원, 건립비 7,522백만원)
 - 토지매입비 : 3,608백만원(전액 구비)
 - 건립비 : 7,522백만원(시비 4,500백만원, 구비 3,022백만원)

- 그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는 '21년 5월 故 서세옥선생의 유족과 기증에 따른 협약 이후 '23년 10월부터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과 성북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음.
- 부지 매입은 사업부지 감정평가(2024.6)를 거쳐 토지소유자(서세옥 子 서도호)와 감정평가 금액보다 약 10억원 낮은 36억원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으며, 매입 시기는 10~12월 예정이고, 토지매입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함.

매입부지 감정평가			
구분	토지(원)	건물(원)	금액(원)
감정평가A	4,659,600,000	22,566,130	4,682,166,130
감정평가B	4,659,600,000	19,525,000	4,679,125,000
평균	4,659,600,000	21,045,565	4,680,645,565

- 이번 임시회에서 본 공유재산안전건을 의결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12월 건물을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¹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¹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2022.11.3.)

- 성북구는 풍부한 근현대 역사문화예술 자원과 자연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성북구립 서세옥 미술관’ 건립은 이와 같은 정체성 확장에 부합하고, 서울 내에 한국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의 문화향유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미술관 분관 건립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 신축에 이르기까지 111억여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비보조금 등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 12.(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23호)

나. 회부일자 : 2024. 8. 28.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권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기여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장, 예비군대원, 차량에 대한 정의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7. 11. ~ 2024. 07. 3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관내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응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3(1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3) 제1항제5호와 국방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1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12)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의 입·퇴소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등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취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 됨.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성북구에 거주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과 훈련장을 관장하는 부대 제56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¹⁵⁾까지 차량을 지원하는 차량에 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이와 관련 2024년 8월 현재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조례」 제정 현황(2024.8.현재)

■ 서울시 : 총 22개 자치단체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용산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구로, 관악, 금천, 강동, 노원, 중구	성북, 종로, 강북, (준비중 : 3개구)

15) 제56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까지 19km(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대중교통 이용시 최소 2번 환승, 1시간 20분 소요(성북구청 기준)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예비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입소 편의, 사기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 됨.
- 참고로, 2023년 12월 서울시는 자치구에 예비군 훈련 차량운행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25년도부터 서울시 50% : 성북구 50% 매칭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25년 성북구 예비군 임대버스 지원 소요예산

연간훈련대상(명)				소요예산(원)		
합계	5~6 년차	미지정 *4일	이월 보충	총 소요예산	자치구예산 (50%)	서울시예산 (50%)
15,517	4,641	7,576	3,300	93,100,000	46,550,000	46,550,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